

#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형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형사 판결서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
-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 사용되는 시스템의 유지·보수 비용 보전을 위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 및 출력 시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함

## 3. 주요내용

-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시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(안 제5조제1항)
-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·복사 규칙에서 정하는

수수료를 내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

4.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  
별지와 같음

##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확정된 후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”를 “확정된 후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법원에서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”을 “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358